

2022년 7월 1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 13일(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문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장훈 과장(044-204-7850), 송제훈 서기관(7329), 한경아 사무관(7859), 유환규 주무관(7860)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7월 14일(목)부터 신청 개시

- '21.12.17. ~ '22.5.31. 중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 지급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
-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 가능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 지원 대상·요건 >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 신청 일정 >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년은 7월 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

일 정	주 요 내 용	
7월 14일(목)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목)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목)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수료 마감

< 신청 방법 >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한경아 사무관(☎ 044-204-7859), 유환규 주무관(78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2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

3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4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
(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